

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08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1. 02. 17.
발 의 자 : 김영철 의원 외 17인

□ 개정이유

-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주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「단원구어머니합창단」을 설립·운영함으로서
- 지역간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화합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단원구어머니합창단을 설치할 수 있는 적용범위 추가마련(안 제2조)
- 단원구에 설치하는 어머니합창단은 단원구어머니합창단으로 명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단원구어머니합창단의 단장은 단원구청장이 되도록 규정함(안 제5조)
- 일반단원의 자격연령을 55세이하에서 60세이하로 상향 조정함(안 제7조)

□ 개정조례안 : 불임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불임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84,000천원

- 창단경비 ----- 44,000천원
※ 단원모집, 창단식, 의상, 피아노 구입 등
- 연간 운영비 ----- 40,000천원
※ 지휘자 보상, 반주자 보상, 합창단 운영비, 천국대회 참가, 정기연주회 등

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상록구에”를 “상록구, 단원구에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상록구어머니합창단이라”를 “상록구어머니합창단, 단원구에 설치하는 어머니합창단은 단원구어머니합창단이라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된다.”를 “되며, 단원구어머니합창단의 단장은 단원구청장이 된다.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55세 이하의”를 “60세 이하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적용)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시 및 <u>상록구에</u> 설치된 어머니합창단에 한한다.	제2조(적용) ----- <u>상록구, 단원구에</u> -----.
제3조(명칭) 시에 설치하는 어머니합창단은 <u>안산시어머니합창단</u> 이라 칭하고, 상록구에 설치하는 어머니합창단은 <u>상록구어머니합창단</u> 이라 칭한다.	제3조(명칭) ----- ----- <u>상록구어머니합창단,</u> <u>단원구에</u> 설치하는 어머니합창단은 <u>단원구어</u> <u>머니합창단</u> 이라 -----.
제5조(구성) ① (생략) ② 시 어머니합창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, <u>상록구어머니합창단</u> 의 단장은 상록구청장이 된다.	제5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되며, <u>단원구어머니합창단</u> 의 단장은 <u>단원구청장</u> 이 된다.
제7조(단원자격) 지휘자, 반주자를 제외한 일반 단원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<u>55세 이하의</u> 여성으로서 합창에 소질이 있는 자로 한다.	제7조(단원자격) ----- ----- <u>60세 이하의</u> -----.